##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19

발의연월일: 2021. 9. 3.

발 의 자 : 홍익표 • 권칠승 • 민형배

한준호 · 서동용 · 임호선

이장섭 · 이형석 · 정태호

홍성국 · 윤영찬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지역사회의 현실과 나아가야 할 청사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작·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사회의 기대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이와 관련하여입법적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조문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4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사는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 ~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⑤ 공사는 방송의 지역적 다양
	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
	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